

II. 보험상품 및 가입관리

1. 개요

1.1 보험상품 종류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지역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I)	주택·온실	개별·단체	전국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II)	주택	단체	전국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III)	주택	개별·단체	전국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 (V)	온실	개별	5개 지역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VI)	상가·공장	개별·단체	전국

1.2 공통사항

- (가입방법) 개별가입(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 단체가입(지자체 등을 통한 가입)
- (보상종류) 정액보상형(가입금액 대비 70%, 80%, 90%), 실손보상형(실손비례형 포함)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 연중가입 가능
 -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보장 특약’은 1년 또는 동절기 중 선택 가입 가능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보장 특약》

- * 대상 및 보상내용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로 보상내용은 온실과 동일
- * 보험기간 : 1년 또는 동절기 5개월(11월~익년 3월) 중 선택 가능
- * 보험료율 : 대상재해와 보험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요율 적용
 - 보험기간이 1년이면 온실 요율의 90%, 동절기이면 50%
 - 단기요율의 적용

보험기간	1개월까지	2개월까지	3개월까지	4개월까지	5개월까지
단기요율	20%	40%	60%	80%	100%
가산요율	보험기간에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에는 단기요율에 각월마다 10%씩 가산한다. 단,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 (보험료 할인) 동일 보험목적물을 동일 보험사에 계속 또는 장기 계약(2~3년)시
 - 계속 계약 연 요율의 5% 할인(100% → 95%)
 - 2년 계약 연 요율의 25%p(200% → 175%), 3년 계약 연 요율의 50%p(300% → 250%) 할인
- (보험료 분납) 주민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 분납유형 : 2회, 4회(첫 회차 보험료 가중 납입, 2회 분납 : 70%, 4회 분납 : 40%)



2. 보험상품별 세부내용

2.1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 주택(동산 포함), 온실에 대한 정액보상형 상품으로 개별·단체 가입 가능
- 기업체 등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으로 가입 할 경우 총 보험료의 5~10% 할인 적용(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사만 판매)
-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이 가입된 온실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지원이 되지 않음

가. 주택

-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 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¹⁾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과	50㎡ 이하	3,500만원(3,150만원*)	4,000만원(3,600만원*)	4,500만원(4,05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70%× 100만원(90만원*)	주택면적(㎡)×80%× 100만원(90만원*)	주택면적(㎡)×90%× 100만원(90만원*)
전반과		전과시 지급되는 보험금×70%		
반과		전과시 지급되는 보험금×50%		
소과		전과시 지급되는 보험금×25%		
지붕재 파손		전과시 지급되는 보험금×5~25%		
침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초과	200만원 + {3만원 × 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 × 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 × 주택면적(㎡)}

* 공동주택 보험가입금액

1)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약정한 금액



- 소과 피해 중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상의 균열 발생(주 계약)

피해면적	보상내용
균열길이 2m 이상 ~ 연면적의 5%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연면적의 5%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연면적의 10%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연면적의 15%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연면적의 20%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주) 피해면적 : 균열길이(균열의 합) × 0.5m

- 지붕재 파손(주 계약)

피해면적	보상내용
2㎡ 이상 6㎡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6㎡ 이상 10㎡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10㎡ 이상 15㎡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5㎡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선택 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분	보상내용																			
동산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 피해(전과, 전반과, 반과, 소과)에 따라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보상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면적 50㎡ 이하 : 400만원 - 주택면적 50㎡ 초과 : 175만원 + {4만5천원×면적(㎡)} 																			
주택소과 및 지붕재 파손 손해 불보장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담보의 소과 및 지붕재파손 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선택가입 보험료의 일부 할인 																			
주택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침수손해에 대해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침수보험금을 추가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피해유형</th> <th colspan="3">보험가입금액</th> </tr> <tr> <th>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th> <th>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th> <th>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th> </tr> </thead> <tbody> <tr> <td>침수</td> <td></td> <td></td> <td></td> </tr> <tr> <td>50㎡ 이하</td> <td>350만원</td> <td>375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50㎡ 초과</td> <td>200만원 + {3만원× 주택면적(㎡)}</td> <td>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 주택면적(㎡)}</td> <td>175만원 + {4만5천원× 주택면적(㎡)}</td> </tr> </tbody> </table>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침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초과	200만원 + {3만원× 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 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 주택면적(㎡)}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침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초과	200만원 + {3만원× 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 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 주택면적(㎡)}																	
주택침수손해 불보장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보험료의 일부 할인 풍수해보험 I 만 가입 가능 																			



나. 온 실

-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 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파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8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으로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선택 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분	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기준 이상의 대설로 인한 손해만 보상

2.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 주택(동산 포함)과 세입자 동산에 대한 정액보상형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상품
- 가입자(주민) 부담 보험료 10% 할인 적용



- **우선가입 대상**은 재난취약계층(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및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재해취약지, 침수흔적도 작성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위험지구의 거주자
 - 주택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중 ‘주택침수손해 不 보장 특약’만 제외하고 담보 및 보상 동일
 - 세입자 동산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중 ‘동산 특별약관’과 보상내용 동일

<동산 특별약관>

구분	보상내용
동산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 • 피해(전과, 전반과, 반과, 소과)에 따라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보상 •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면적 50㎡ 이하 : 400만원 - 주택면적 50㎡ 초과 : 175만원+ {4만5천원×면적(㎡)}

2.3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동산제외)**에 대한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임의 선택 가입 가능한 자기부담금 특약이 있음

가. 주택

-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의 보험료를 정부지원 하지 않음



－ 보상금액(실손비례보상)

구분	가입형태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²⁾ 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전부보험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약관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나. 자기부담금(계약자 임의선택 가능)

구분	자기부담금액					
	없음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할인율(%)	0.0	1.4	2.8	4.1	5.3	6.4

주) 상기 할인율은 기본요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주택 1층 및 지하층만의 담보(특약)

- － 풍수해로 인한 공동주택의 1층 및 지하층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전체 세대가 가입하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55%” 저렴

2) 보험가액 : 보험목적물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시장가격



2.4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V)

○ 온실에 한해 판매되는 실손보상형 상품으로 사고발생 시 시가(감가상각 적용)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발생한 손해액 실손보상

가. 대상지역

- 제주도, 밀양시, 진주시, 화순군, 임실군 5개 지역 대상 판매

나. 대상온실

- 내재해형 온실 및 농가표준형(단, 구조인증을 받은 경우 비규격온실 포함)

다. 보험가입금액

- 설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진 경년감가율(단동 8%/년, 연동 4%/년)을 적용한 금액(단, 설치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을 시 기준단가를 최초 설치 금액으로 함)

2.5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물건에 한해 판매되는 실손보상형 상품으로 사고발생시 시가(감가상각 적용)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발생한 손해액 실손보상

가.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나. 가입목적물

-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다.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라. 특약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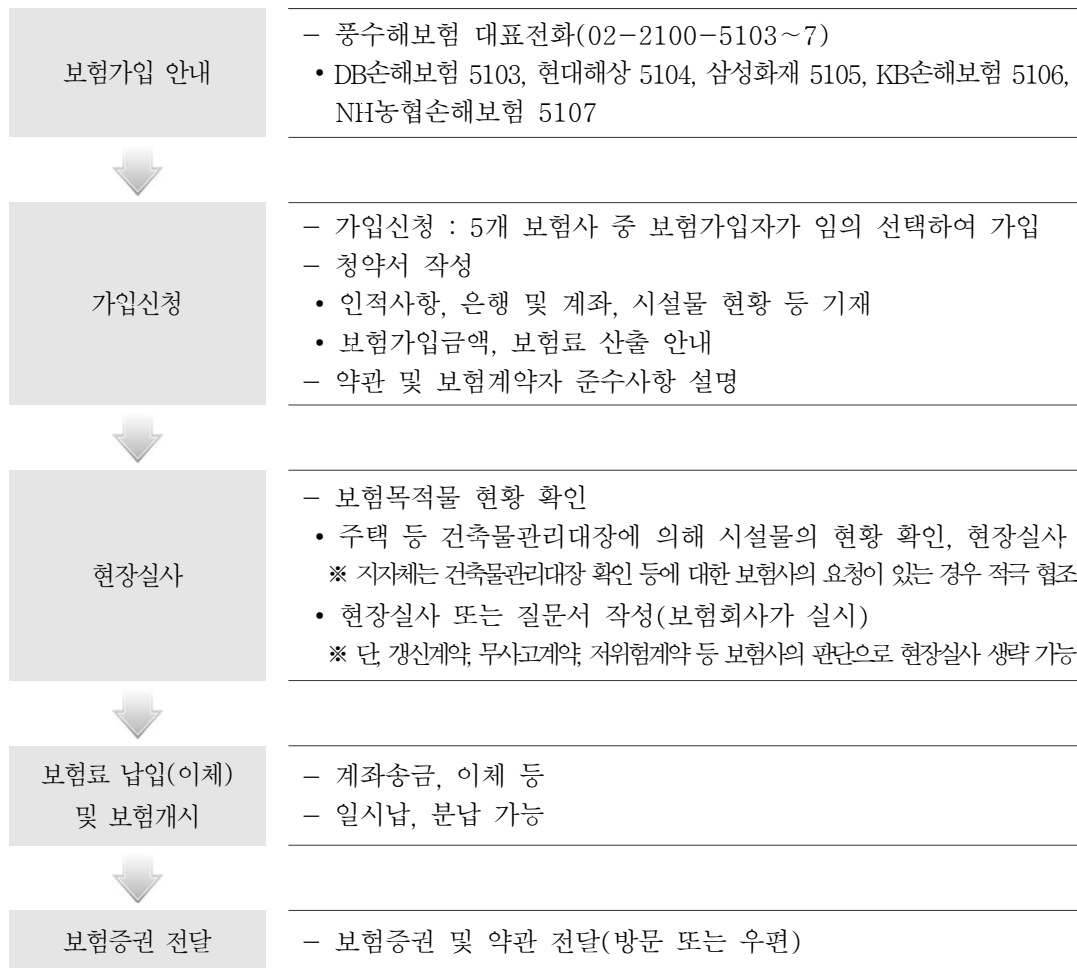
- 야외간판 보장 특약 : 보상한도 500만원



3. 가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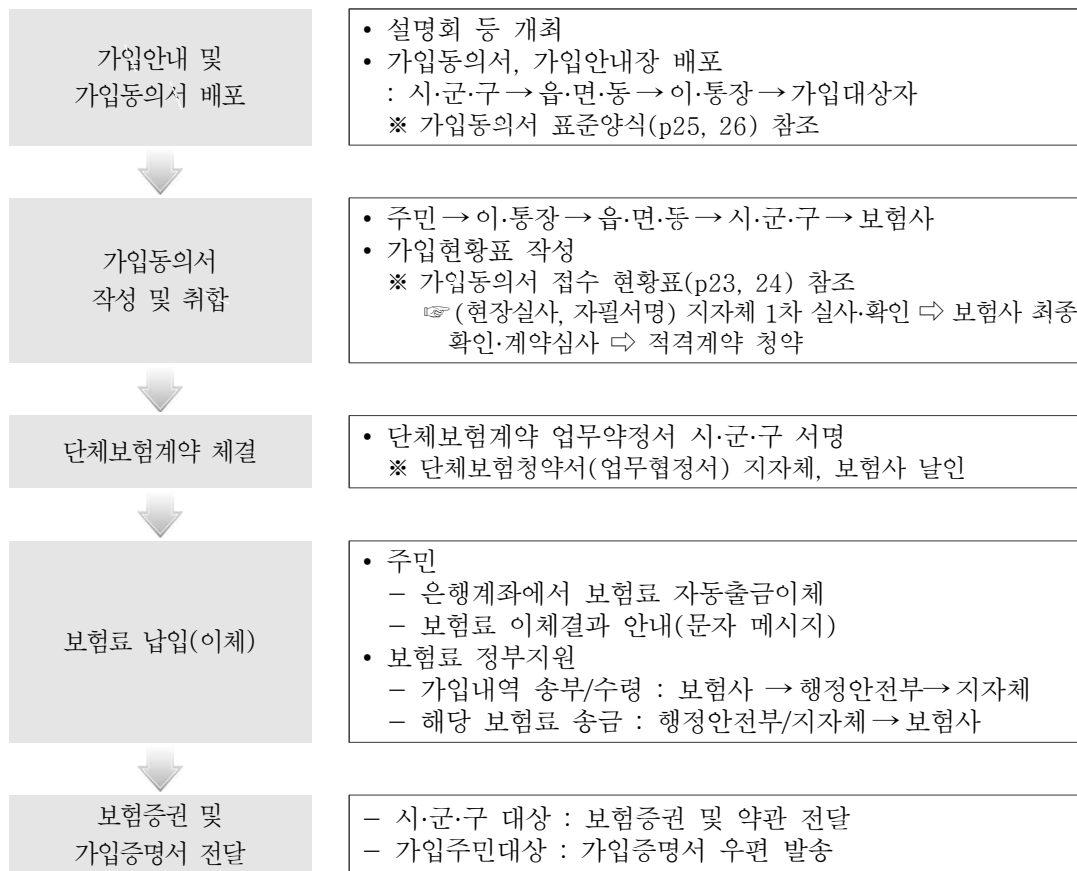
3.1 보험사를 통한 개별가입

- (상품종류)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V),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 (판매방식)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
- (제출서류) 청약서(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 기타 필요서류)
- (보험가입 절차)



3.2 지사채를 통한 단체가입

- (상품종류)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판매방식)
 - 지사채(시·군·구 단위)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 민간기부자 등 제3자가 지사채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저소득층 및 재해취약지역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 가능
- (제출서류) 청약서(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 기타 필요서류)
- (할인혜택)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 부여
- (보험가입 절차)



○ 단체보험 관련 주체·단계별 역할

구분	역할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동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가입동의서 접수(→이·통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읍·면·동)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 이·통장) 가입동의서 전달(→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1차 확인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동의서 취합(← 읍·면·동) 접수 현황표 작성 및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1차 확인
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및 상담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최종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 보험개시 및 단계별 마감일

내용	일자
가입기간 : 가입동의서 접수	수시
주민분 보험료 수납(출금이체) 마감 - 보험사 계약입력 포함	익월 14일 24:00
보험개시	익월 15일 00:00~

- 재난취약계층(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등 우선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 - 개인’간 개별가입이 원칙임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은 개별가입과 다르게 보험개시 시점이 행정처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